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¹⁾

염 정 완 *

☞ 우리나라의 대외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주요 농식품 교역 시장인 중국의 ‘농식품 관련 규정 및 표준’을 검토하여 對중국 농식품 수출 기반을 마련 및 확대할 필요 ☞

1 개요

- 2022년 8월 한·중수교는 30주년을 맞이하였고,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38배, 수출은 49.1배, 수입은 29.4배 증가함.²⁾ 또한,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로 농축산물 시장도 개방됨. 하지만, 사드(THAAD) 배치,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19 발생 등 국내외 통상 환경의 변화로 2016년 이후 한국과 중국 간 농축산물(임산물 포함)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56억 달러³⁾ 내외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중 간 농축산물 교역액은 2021년 65억 달러로 2020년과 비교하여 18.4% 증가하였고, 동기간 한국의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7.4%,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22.2% 증가함. 2021년 한·중 간 농축산물 교역 증가는 가공식품 및 임산물의 수출입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남. 2021년 한국의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농축산물 교역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동기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도 증가하여 농업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농업 분야에서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및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중국 내 통상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⁴⁾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2000년대 식품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중국 국민의 농식품 안전에 관한 관심 증가와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농식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통상 환경 변화와 농식품 관련 제도 강화에 대응하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전문연구원(youmjw@krei.re.kr).

본고는 2022년 4월에 발간된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의 일부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임.

1) 중국 법, 규정에 관한 한국어는 번역은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고서, 식품안전정보원의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index.do>)을 참고함.

2) 한국무역협회(2021년)의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을 참고함.

3) 해당 자료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활용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중 간 농축산물 교역액을 평균한 수치임.

4)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수입 규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조치들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한국의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 기반 구축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의 최신 농식품 관련 규정 및 표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식품법(Food Laws), 식품표시 요건(Labeling Requirements), 포장 규정(Packing and Container Requirements) 등 중국의 농식품 관련 규정 및 표준에 대해 소개하고 주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2 식품법(Food Laws)

- 중국의 식품 안전과 관련된 법은 크게 식품안전법(Food Safety Law/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농산품 품질안전법(Law on Farm Product Quality and Safety/中華人民共和國農產品質量安全法), 소비자권익보호법(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수출입상품검험법(Law on the Inspection of Import and Export regulatory Commodities/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등이 있음.

2.1. 식품안전법(Food Safety Law)

- 중국은 2015년 전국인민대표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NPC)에서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개정된 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개정된 식품안전법은 총10장 1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중국 내 식품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통합(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⁵⁾)
 - 2) 식품 생산 과정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 3) 부적절 식품으로 발생하는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식품생산경영자의 책임 명시
 - 4) 위험 예방 기능 제고
 - 5) 특수식품(보건식품, 영유아 조제분유, 특수 의료용 식품)에 대한 감독·관리 기능 강화
 - 6) 식품안전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형사 처벌 포함) 명시
-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2019년 식품안전법 실시조례⁶⁾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 중국은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개정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식품생산경영자의 책임과 중국에서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이력 추적 내용을 법률화.

5)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식품 안전 법률법규 초안 작성, 식품 행정허가 절차의 제정 및 시행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 소속 기관임.(한국무역협회의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를 참고·인용함)

6) 식품안전법 실시조례는 총10장 8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2.2. 농식품 품질안전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수출입상품검험법

- 2006년 시행된 농식품 품질안전법은 식용 농산물과 농업 투입물(농약 및 비료)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리 조치 내용을 법률화하였고, 해당 법에 규정된 상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면 식품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됨. 중국은 2022년 농식품 품질안전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안은 위험 관리 및 국가표준 개발, 생산, 포장 및 라벨링, 감독,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된 총 8장 8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은 1993년 제정되었고, 2013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2013년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쇼핑, 제품 리콜, 부적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화함.
- 1989년 제정된 수출입상품검험법은 2021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법의 실시 조례는 2017년 3월 개정됨. 수출입 상품 목록(검사 대상)에 기재된 모든 수출입 상품(식품 포함)은 수출입상품검험법을 준수해야 하고, 상품별 통관 가이드라인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해당 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3. 농식품 수입 및 식품 안전 관련 기타 법령

- 식품안전법, 농식품 품질안전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수출입상품검험법 외 중국 내 농식품 수입 및 식품 안전과 관련된 주요 법령(실시조례, 규칙, 표준 포함)은 다음과 같음.
 - 1991년 제정된 수출입동식물검역법은 중국으로 출입국 또는 중국을 통과하는 동식물 및 관련 제품, 동식물 및 관련 제품을 포함하거나 운송하는 컨테이너, 포장 재료, 깔개, 동식물 전염병 및 감염 지역으로부터의 운송 수단 등에 대한 검역·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AQSIQ)는 2017년 출입국 검사검역절차 관리 규정을 시행함. 해당 규정은 수입품의 출입국 검역·검사에 대한 검역·검사 절차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검역·검사 신고서 접수, 서류 심사, 현장 및 실험실 검역·검사, 동식물 격리 검역, 검역 처리(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평정, 면장발급, 서류정리 및 보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중국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검사 및 소독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수입 조치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였고, 중국 내 성과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농식품 교역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 관련한 조치에 대해 산발적으로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입항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항과 콜드체인 시설에 대한 규제 조치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중국 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조치는 아래와 같음.

- 1) 해관총서 공고 [2020] 1037): 해외 제조업체의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eople's Republic of China; GACC)는 긴급 예방 조치의 수단으로 해당 업체에 대하여 1~4주간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음.
- 2) 콜드체인 기술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2022년 1월 30일 국무원은 콜드체인 식품 생산 및 운영에서의 코로나-19 예방·통제와 콜드체인 식품 생산 및 운영 절차에서 코로나-19 방제·소독에 대한 업데이트 된 기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3) 국무원의 코로나-19 예방·통제 위원회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예방 및 종합 소독 작업 계획을 발표함.

3 식품표시(Labeling) 요건

3.1. 일반 요건

■ 식품 생산 라벨링은 식품안전법, 식품표시의 감독·관리 조치 및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식품안전법에 의거 예포장식품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해야 함.

- 1) 명칭, 규격, 순 함량, 생산 일자
- 2) 성분 또는 원료 배합표
- 3) 생산자 명칭, 주소, 연락처
- 4) 품질보증기한(유통기한)
- 5) 제품 표준 코드
- 6) 보관조건
- 7) 사용된 식품 첨가물의 국가표준에서의 범용명칭
- 8) 생산허가증 번호(수입, 시설 등록 번호)
- 9) 영유아 조제분유 및 특정 제품(농업생명공학의 파생 제품 등)에 필요한 기타 정보

■ 또한, 중국 내에서 유통(생산, 판매)되는 식품은 식품표시 관리규정(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시행령 102)을 따라야 함. 해당 규정은 식품 표시와 관련하여 1) 식품 및 포장에 부착, 인쇄, 표시하는 식

7) 해당 공고는 2020년 9월 21일에 G/SPS/N/CHN 1173으로 WTO SPS 위원회에 통보됨.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품의 명칭, 2)품질 등급, 3)상품 수량, 4)식용방법 및 사용 방법, 5)생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문자, 상징, 숫자, 도안 및 기타 설명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음.

- 2020년 중국은 식품표시 관리규정의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통보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식품표시 요건의 해당 범위를 수입 및 국내 생산 제품, 식품 첨가물, 특수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3.2. 수입 식품표시 요건

- 수입 식품에 대한 표시 요건은 중국 해관총서의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해관총서 시행령 249)을 따라야 함. 해당 관리방법은 기존 수입 식품에 대한 표시 요건을 통합하는 것으로 수입 식품의 포장, 라벨, 표시는 중국의 법률, 규정, 식품 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제품 설명이 필요한 경우 증문으로 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신선 및 육류(냉동) 수입 식품의 내외부 포장지에는 증문 및영어(또는 증문 및 해당 수출국의 언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 또한, 라벨은 내외부 포장지에 뚜렷하고 식별하기 쉽게 고정되어 있어야 함. 외부 포장지는 제품 규격, 제품 위치(특정 주/성/도시), 목적지, 생산 일자, 유통기한, 보관온도 등의 중국어 라벨이 포함되어야 함. 목적지는 반드시 중국어로 표시되어야 하고, 수출국(지역)의 공식적인 검역·검사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2) 수입 보건식품 및 특수선식용 식품의 최소 판매포장에는 증문 라벨이 반드시 인쇄되어 있어야 함 (스티커 불가).

- 중국은 2018년에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에 수출입 예포장식품 표시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한조치를 통보함. 해당 조치는 식품 생산자의 책임, 라벨링 검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라벨 검사 시 검역·검사 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2018년 10월부터 시행됨.

- 2019년 해관총서는 수입 제품 표시 검토 요건을 변경한 수출입 예포장식품 라벨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선적(첫 번째) 전 해관총서에 수입 식품 라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지게 됨. 다만, 부적합 라벨이 발견되면 해관총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식품을 억류, 폐기, 또는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국은 2022년 1월부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하고, 내외부 포장 라벨에 해외생산 기업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함.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 중국은 2020년과 2021년에 예포장식품 라벨링에 대한 주요 국가 식품 표준을 발표함. 2020년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라벨 통칙(GB7718-xxxx)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와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고, 2021년에는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에 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개정 초안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함.

표 1. 라벨링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 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11년 4월 20일	2012년 4월 20일	GB7718-2011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라벨 통칙 (预包装食品标签通则)
2011년 10월 21일	2013년 1월 1일	GB28050-2011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 (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2013년 11월 29일	2015년 6월 1일	GB29924-2013	식품첨가제표시 통칙 食品添加剂标识通则
2013년 12월 26일	2015년 5월 1일	GB13432-2013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 특수 영양식품 라벨 (预包装食品特殊膳食食品标签)

자료: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 를 재인용함.

4 포장 규정

- 식품안전법은 "식품 및 첨가물을 포장하거나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종이, 대나무, 목재, 금속, 도자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 섬유, 화학 섬유 또는 유리로 만든 도료"를 식품 포장재와 용기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직접 소비되는 식품은 작게 포장해야 하고, 무독성이고 깨끗한 포장 재료와 용기 사용을 규정하고 있음. 식품의 저장, 운송 및 적재/하역에 사용되는 용기는 식품의 깨끗한 상태 유지와 오염 방지를 위해 안전한 용기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은 식품 포장에 관한 과도한 포장을 지양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 조치로 관련 국가표준을 발표함. 중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도한 포장은 포장 층수, 포장(내부) 공간, 포장 비용 등이 정상적인 요건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함. 2021년 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은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과도한 포장을 제한하기 위한 용어, 정의, 요건, 규칙 등을 명시한 국가표준(GB23350-2021)을 발표하였으며, 판매용이 아니거나 선물용의 경우 해당 국가표준을 따르지 않음.
- 2021년 중국은 소독제, 식품접촉을 위한 고무 재료 및 제품, 식품접촉을 위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GB 4806.7)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 1) 소독제 국가표준: 식품 및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원료, 관능 특성, 위생 지수, 소독제 라벨에 대한 안전 요건 등 명시
- 2) 고무 재료 및 제품 국가표준: 고무 재료 및 제품에 대한 범위, 용어 및 정의, 기본 요건, 원료 요건, 관능 요건, 물리적·화학적 지표, 기타 기술 요건, 용출시험 및 라벨링 요건 등 명시
- 3)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국가표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재료, 가황 처리되지 않은 제품, 전분 기반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등은 해당 국가표준을 따른다. 해당 국가표준은 식품접촉을 위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의 용어 및 정의, 기본 요건, 기술 요건 및 라벨 요건 등 명시

표 2. 식품 포장 및 용기 관련 위생·안전 기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12년 4월 25일	2012년 10월 25일	GB14930.2-2012	소독제 (消毒剂)
2012년 4월 25일	2012년 10월 25일	GB11676-2012	식품 용기 점착방지용 실리콘 도료 (有机硅防粘涂料)
2012년 4월 25일	2012년 10월 25일	GB11677-2012	음료캔 내면용 수용성 에폭시 도료 (易拉罐内壁水基改性环氧树脂涂料)
2012년 5월 17일	2012년 11월 17일	GB9686-2012	식품용기 및 탁상식기 내면용 PA 및 에폭시수지 코팅 (内壁环氧聚酰胺树脂涂料)
2011년 11월 21일	2011년 12월 21일	GB9684-2011	스테인리스강 제품 (不锈钢制品)
2015년 9월 21일	2016년 9월 21일	GB31603-2015	식품접촉물질 및 제품 생산통용위생규범 (食品接触材料及制品生产通用卫生规范)
2015년 9월 22일	2016년 9월 22일	GB31604.1-2015	식품접촉 재료 및 제품 이행 시험 통칙 (食品接触材料及制品迁移试验通则)
2016년 10월 19일	2017년 10월 19일	GB4806.1-2016	식품접촉 재료 및 제품 통용 안전 요구 (食品接触材料及制品通用安全要求)
2016년 10월 19일	2017년 10월 19일	GB9685-2016	식품접촉용 허가물질목록 (食品接触材料及制品用添加剂使用标准)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3-2016	에나멜 제품 (搪瓷制品)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4-2016	도자기 제품 (陶瓷制品)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5-2016	유리 제품 (玻璃制品)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6-2016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수지 (食品接触用塑料树脂)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7-2016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食品接触用塑料材料及制品)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8-2016	식품 접촉용 종이, 판지 재료 및 제품 (食品接触用纸和纸板材料及制品)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9-2016	식품 접촉용 금속 재료 및 제품 (食品接触用金属材料及制品)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10-2016	식품접촉 도료 및 코팅 (食品接触用涂料及涂层)
2016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9일	GB4806.11-2016	식품접촉 고무 재료 및 제품 (食品接触用橡胶材料及制品)
2021년 9월 7일	2022년 7월 7일	GB31604.8-2021	식품접촉 재료 및 제품의 용출시험 食品接触材料及制品总迁移量的测定

자료: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를 재인용함.

5 식품 첨가물 규정

5.1. 식품 첨가물

- 중국의 식품 첨가물 승인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H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에 첨가 가능한 첨가물은 식품안전 국가표준(GB2760-2014)에 명시되어 있는 첨가물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국가표준은 현재 개정 중에 있음.
- 중국에서 식품 첨가물 허가 및 등재된 첨가물의 용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조치(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행령 73)에 따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이에 따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온 첨가물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첨가물을 허용 첨가물 목록에 추가할 것인지를 결정함. 첨가물 관련 신청 절차 및 재료 요건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식품 첨가물 생산은 시설 운용 허가증에 "식품 첨가물 생산"이 기재된 시설만 생산할 수 있음.
- 중국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이 사용된 수입 제품 관리를 위해 해관총서 및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공동으로 수입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검사에 대한 국가표준을 발표함. 해당 국가표준에 따라 수입기업은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안전성 평가 자료를 포함한 수입 요청서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해당 요청을 승인하면 수입 허가증이 발급되고 수입자는 통관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입국항의 검역·검사 기관에 제출해야 함.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표 3. 식품 첨가물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11년 4월 20일	2012년 6월 20일	GB2760-2015	식품 첨가물 사용 표준 (食品添加剂使用标准)
2013년 11월 29일	2015년 6월 1일	GB29924-2013	식품 첨가제 표시 통칙 (食品添加剂标识通则)
2011년 7월 15일	2011년 9월 5일	GB26687-2011	식품 첨가제 혼합제제 통칙 (复配食品添加剂通则)
2016년 10월 19일	2017년 10월 19일	GB9685-2016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용 첨가제 사용 표준 (食品接触材料及制品用添加剂使用标准)
2018년 6월 21일	2019년 6월 21일	GB31647-2018	식품 첨가물 생산 통용 위생 규범 (食品添加剂生产通用卫生规范)

자료: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를 재인용함.

5.2. 향료 및 영양 강화제

- 중국에서 식품 첨가물로 분류되는 착향료(Flavoring substances)와 향료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최근 시행되고 있음.
- 영양 강화제는 식품의 영양적 성질 향상을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천연·인공 영양소 및 그 밖의 영양 성분을 의미함. 중국은 2012년에 식품 영양 강화제 국가표준(GB14880-2012)을 발표했고, 해당 국가표준은 영양 강화제에 대해 정의하고 식품에 첨가 가능한 강화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영양 강화제 또는 식품 첨가물로 분류되는 물질이 식품의 영양 성분 향상을 위해 사용될 경우 식품 영양 강화제 국가표준을 따라야 하고, 식품 첨가물로 사용될 시 식품 첨가물 사용 표준(GB2760-2011)을 준수해야 함.

표 4. 착향료 및 향료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20년 9월 11일	2021년 3월 11일	GB29938-2020	식품용 향료 통칙 (食品用香料通则)
2020년 9월 11일	2021년 3월 11일	GB30616-2020	식품 첨가물 향료(복합 맛) (食品用香精)

자료: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를 재인용함.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6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6.1. 살충제

- 식품안전법은 살충제 사용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잔류물이 오래 남는 유독성 살충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품에 관한 연구와 잔류물이 적은 고효율 및 저독성 살충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2017년 중국의 국무원은 농약 관리 조례를 발표하였고, 해당 규정에는 살충제의 등록, 생산, 유통, 사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또한,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중국 농업농촌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RA)의 농약 등록을 위한 행정조치, 농약 생산 및 허가에 관한 행정조치, 농약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조치 등 여러 행정조치가 존재함.
- 중국 내의 농약 생산, 운영, 품질 감독은 중국 농업농촌부의 재배업관리사(농약관리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재배업관리사(농약관리사)에서 농약에 대한 사용 지침을 제공함. 또한 중국 농업농촌부 산하기관인 농약검사센터(China Pesticide Information Network; ICAMA)에서 농약 등록, 품질 관리, 생물 검정 및 농약 잔류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6.2. 농약 최대잔류허용 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s)

- 중국은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공동으로 식품 중 농약 최대잔류허용 국가표준(GB2763-2021)⁸⁾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국가표준은 농약 564종의 10,092가지 MRL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국의 농업농촌부는 농식품 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해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 동안 식품에 포함된 농약(살충제, 동물용 의약품)의 MRL 항목을 15,000가지로 확대할 계획임.

6.3. 동물용 의약품(Veterinary Drugs)

- 중국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연구, 생산, 유통, 수출입, 활용은 동물용 의약품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하고, 농업농촌부의 가축수의사국이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 또한 농업농촌부 산하기관인 중국수의약품감독소(수약평가센터)에서 동물용 의약품 및 활용에 관한 평가, 검사, 감독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 모니터링, 동물용 의약품 국가표준 개발을 담당함.

8) 해당 국가표준은 기존의 '식품 중 농약 최대잔류허용 한도(GB2763-2019)'를 대체하는 국가표준임.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 2022년 중국 농업농촌부와 해관총서는 수입 동물용 의약품 목록을 업데이트한 공고 507을 발표함. 업데이트된 목록에는 82개의 수의사 약품과 해당 약품에 대한 HS 코드가 포함되어 있음. 해당 공고에 의거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하는 회사는 농업농촌부 또는 지역 관련 당국에 “수입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통관 양식”을 제출해야 함.
- 2019년 중국의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식품 내 동물용 의약품 최대잔류허용 기준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GB31650-2019)을 발표함. 해당 국가표준은 가축, 가금류, 수산물, 꿀벌 제품 등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267종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중국은 식품 내 동물용 의약품 최대잔류허용 국가표준에 41종의 동물용 의약품을 추가를 위한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함.

6.4. 진균독(Mycotoxins)

- 2017년 중국은 식품 중 진균류 독소 제한 규정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GB2761-2017)을 발표함. 해당 국가표준은 식품 중 아플라톡신(Aflatoxin) B1, 아플라톡신(Aflatoxin) M1, 보미톡신(Deoxynivalenol), 파툴린(Patulin), 오크라톡신(Ochratoxin) A 및 제랄레논(Zearalenone)의 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2021년 중국은 식품 중 아플라톡신 오염 통제 규범(GB31653-2021)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표준은 땅콩, 옥수수, 면실, 견과류, 젖소 사료에 적용됨.

6.5. 기타

- 2021년 중국은 식품 중 오염물질 기준에 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개정안에는 기존 국가표준(GB2762-2017)의 “식품 내 카드뮴 한도”에 “영유아용 시리얼 기반 보충 식품(Complementary Food)” 항목을 추가함.
- 중국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포장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제한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GB29921-2021)을 통해병원균 지표, 병원균 제한, 검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예포장식품과 더불어 즉석식품의 병원성 미생물 제한에 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GB31607-2021)도 시행하고 있음.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7 기타 규정

7.1. 시설·상품 등록 규정

-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시행령 248)을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식품, 동물용 사료 및 제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해외 식품 생산 및 콜드체인 시설은 해당 규정에 따라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함. 해당 규정에 따라 해관총서에 등록하는 방법은 품목에 따라 1)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2) 수출국주무관청(식품생산 및 위생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이 해당 기업을 추천하는 방법이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기업 및 시설 정보는 해관총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7.2. 특수식품 등록 규정

- 중국은 식품안전법 2015에서 영유아 조제분유, 특수 의료용 식품, 건강식품을 포함하는 ‘특수식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특수식품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특수식품안전 감독관리사의 감독을 따라야 함.

7.2.1. 영유아 조제분유

- 영유아 조제분유는 관련 행정조치(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시행령 26)에 따라 2018년 이후 제조된 영유아 조제분유는 시장감독관리총국(이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등록해야 하고, 외국산 영유아 조제분유는 중국으로 수출 전에 시장감독관리총국에 등록해야 함. 공식적으로 등록된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한 목록은 없지만,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특수식품 정보 쿼리 플랫폼에서 등록된 영유아 조제분유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특수식품 등록 관련 정보(문서 등)는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3개의 식품안전 국가표준⁹⁾을 발표한 이후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과 관련된 공고(No. 10.)를 발표함. 해당 공고는 새로운 국가표준의 시행 전 해당 국가표준을 적용하는 부분과 등록된 배합비 조정, 등록된 배합비 변경 신청, 제품의 유통 기간 안정성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지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9) 영아 조제분유(GB 10765-2021), 6~12개월 영유아 조제분유(GB 10766-2021), 유아 조제분유(GB 10767-2021)를 의미하고 위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2023년 시행될 예정임.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 2019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시행령 26을 개정한 행정조치(영유아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 초안을 발표함. 해당 행정조치 개정 사항에는 배합비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은 완전한 제조 공정을 보유해야 하는 등 기존보다 엄격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고, 그룹 회사와 자회사 간 무료 배합비 이전과 제품 테스트 시간 단축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됨.
-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기업은 자사 제품에 부착된 라벨이 중국의 관련 법, 규칙, 규정, 국가표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영유아 조제분유는 중국으로 수출 전에 중문 라벨을 포장에 부착해야 하고, 최소 판매 포장 용기에 포장 및 통관 시 최소 3개월 이상의 유통기한이 보장되어야 있어야 함. 또한, 중국 내에서 재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 조제분유를 벌크 포장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년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라벨 표시 규범 강화에 관한 공고(No. 38.)를 발표함. 해당 공고에 따라 영유아 조제분유 라벨링은 진실되고 명확하고 구별하기 쉬워야 하고, 허위나 과장, 오도하는 문자 그림 또는 절대적인 표현을 포함해서는 안 됨. 0~6개월 영아 및 6개월 이상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해당 공시에 의거 성분표, 동물성 단백질원, 복합원료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야 함.

표 5. 영유아 조제분유 식품안전 국가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10년 3월 26일	2010년 12월 1일	GB23790-2010	영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우수 생산 규범 (粉状婴幼儿配方食品良好生产规范)
2021년 2월 22일	2023년 2월 22일	GB10765-2021	영아 조제분유 (婴儿配方食品)
2021년 2월 22일	2023년 2월 22일	GB10766-2021	6~12개월 영유아 조제분유 (较大婴儿配方食品)
2021년 2월 22일	2023년 2월 22일	GB10767-2021	유아 조제분유 (幼儿配方食品)

자료: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를 재인용함.

7.2.2.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특수의학용 조제식품(수입제품 포함,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 FSMP)은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등록을 위한 행정조치(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시행령 24)를 따라야 함. 공식적으로 중국 내 등록된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목록은 없으나,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특수식품 정보 쿼리 플랫폼을 통해 등록된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중국은 2021년 해당 행정조치 개정안(특수의학용 식품 등록관리 조치)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통보하였고, 개정안에는 임상 검증 기간을 40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어 있음. 또한 현장 샘플 검사 시행과 등록 인증서의 부록으로 제품 기술 요건(시험 방법 포함)이 포함되어야 하고, 라벨링 및 표시에 대한 요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7.2.3. 보건식품

- 2016년 시행된 보건식품 등록 및 비안¹⁰등록에 관한 행정조치(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시행령 22)는 중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보건식품(수입제품 포함) 등록 및 비안등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2020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 회수 담당 권한 변경(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시장감독관리총국)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표함. 영유아 조제분유와 특수의학용 조제식품과 같이 중국에서 공식적인 보건식품 목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특수식품 정보 쿼리 플랫폼에서 등록된 특수 보건식품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식품 등록에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있음. 추가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9년 보건식품에 대한 경고 문구 표시 관련 지침을 발표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보건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포장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7.3.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중국의 GMP는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 프레임워크의 4개 기둥 중 하나를 구성하고 있으며, GMP 관련 중국 국가표준은 다음과 같음.

표 6. GMP 국가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21년 2월 22일	2022년 2월 22일	GB31651-2021	식기류 집중 소독 위생규범 (餐(饮)具集中消毒卫生规范)
2021년 2월 22일	2022년 2월 22일	GB31652-2021	즉석섭취 전단 과일·채소 가공 위생규범 (即食鲜切果蔬加工卫生规范)
2021년 2월 22일	2022년 2월 22일	GB31653-2021	식품 중 아플라톡신 오염 통제 규범 (食品中黄曲霉毒素污染控制规范)
2021년 2월 22일	2022년 2월 22일	GB31654-2021	외식서비스 통용 위생규범 (餐饮服务通用卫生规范)
2020년 9월 11일	2021년 3월 11일	GB31605-2020	식품 콜드체인 물류 위생규범 (食品冷链物流卫生规范)
2010년 3월 26일	2010년 12월 1일	GB12693-2010	유제품에 대한 국가 식품 우수제조기준 (乳制品良好生产规范)
2010년 3월 26일	2010년 12월 1일	GB23790-2010	영아용 유제품에 대한 국가 식품 우수제조기준 (粉状婴幼儿配方食品良好生产规范)

10) 보건식품 생산기업이 법정절차, 조건, 요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보건기능, 품질 통제가능성을 제출하여 보관, 공개, 비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등록(신청 자료를 체계적으로 평가 및 심사)'보다 완화된 규정임.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13년 12월 26일	2015년 1월 1일	GB29923-2013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 양호생산규범 (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良好生产规范)
2014년 12월 24일	2015년 5월 24일	GB31621-2014	식품경영과정 위생규범 (食品经营过程卫生规范)
2013년 5월 24일	2014년 6월 1일	GB14881-2013	식품생산 통용 위생규범 (食品生产通用卫生规范)
2015년 9월 21일	2016년 9월 21일	GB31603-2015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생산위생규범 (食品接触材料及制品生产通用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8950-2016	통조림 식품 생산위생규범 (罐头食品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8951-2016	증류주 및 그 조제주 생산위생규범 (蒸馏酒及其配制酒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8952-2016	맥주 생산위생규범 (啤酒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8954-2016	식초 생산위생규범 (食醋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8955-2016	식용 식물유 및 그 조제품 생산위생규범 (食用植物油及其制品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8956-2016	당액 또는 꿀에 절인 과일제품 생산위생규범 (蜜饯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8957-2016	떡, 과자, 빵 생산위생규범 (糕点、面包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12694-2016	가축과 가금 도살 가공위생규범 (畜禽屠宰加工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12695-2016	음료 생산위생규범 (饮料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12696-2016	발효주 및 그 조제주 생산위생규범 (发酵酒及其配制酒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13122-2016	곡물 가공위생규범 (谷物加工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17403-2016	캔디, 초콜릿 생산위생규범 (糖果巧克力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17404-2016	팽화식품 생산위생규범 (膨化食品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18524-2016	식품 조사 가공위생규범 (食品辐照加工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20799-2016	육과 육제품 경영 위생규범 (肉和肉制品经营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20941-2016	수산제품 생산위생규범 (水产制品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21710-2016	알 및 알 제품 생산위생규범 (蛋与蛋制品生产卫生规范)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22508-2016	원량 저장 운송 위생규범 (原粮储运卫生规范)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공포일	시행일	표준 번호	국가표준(중국어)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	GB31641-2016	항공식품 위생규범 (航空食品卫生规范)
2018년 6월 21일	2019년 12월 12일	GB8953-2018	간장 생산위생규범 (酱油生产卫生规范)
2018년 6월 21일	2019년 6월 21일	GB19304-2018	포장 음용수 생산위생규범 (包装饮用水生产卫生规范)
2018년 6월 21일	2019년 6월 21일	GB31646-2018	급속냉동식품 생산 및 경영위생규범 (速冻食品生产和经营卫生规范)
2018년 6월 21일	2019년 6월 21일	GB31647-2018	식품첨가물 생산위생규범 (食品添加剂生产通用卫生规范)

자료: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를 재인용함.

표 7.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한 GMP 국가표준

SPS 통보	국가표준(중국어)	국가표준(영어)
1171	食品加工用菌种制剂生产卫生规范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Microbial Food Cultures
1066	熟肉制品生产卫生规范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Cooked Meat
880	冷藏乳制品贮运销售卫生规范	Sanitary Specifications for Storage and Marketing of Refrigerated Dairy Products
859	食品用热加工调味料生产卫生规范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Thermal Process Flavoring

자료: USDA(2022)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를 재인용함.

8 시사점

- 중국 소비자들은 2000년대 들어 발생한 멜라닌 분유파동, 가짜계란, 클렌부테롤 돼지고기 파동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사고 발생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식품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식품안전법 개정 및 식품 안전 관련 규정, 행정조치, 공고, 국가표준 제도화 등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¹¹⁾ 예를 들어, 중국은 2022년부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과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중국의 해관총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라벨에 표기해야 함. 또한, 보건식품 및 특수선식용 식품은 최소 판매 포장에 증문 라벨을 반드시 인쇄하여 표시해야 함.
- 중국 정부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구축 및 강화는 중국 내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수단이지만, 중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국가 및 기업에는 비관세장벽의 수단이 될 수 있음. 비관

11) 류예리·박원석·오선영·최원목·최성열(2014)의 「한-중 FTA 대비 식·의약분야 제도분석 및 대응 방안」을 참고함.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세장벽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은 비관세장벽 조치는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였으며, 동일한 비관세조치라 할지라도국가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음. 한국은 2021년 기준 중국으로 13억 달러 규모의 농축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對중국 수출액은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의 15.6%를 차지하고 있음.¹²⁾ 이에 따라 중국의 농식품 안전제도 강화는 중국이 중요한 농식품 수출국가인 한국에게 무역 방해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음.

- 2021년 중국의 농식품 통관거부 전체 사례는 3,191건으로 2020년 2,096건보다 52.2% 증가하였음. 또한, 2021년 중국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통관거부사례는 총 96건으로 2020년 31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함. 중국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통관거부유형은 라벨링/포장 23건, 성분 부적합 30건, 위생 21건, 서류미비 17건, 기타 5건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중국의 농식품 관련 규정과 관련되어 있음.¹³⁾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성분 부적합, 위생에 관한 통관거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식품 안전 관련 법령 개정, 국가표준 개발 등 식품 안전 제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수입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예를 들어, 중국 베이징시는 2022년부터 ‘베이징 진입 콜드체인 식품 유통 방역체계’를 시행하고 있고, 중국 산둥성은 2022년부터 수입식품 PCR 검사를 냉장·냉동제품에서 상온 제품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코로나-19에 대응한 중국의 새로운 수입 조치는 특히 신속한 유통이 필요한 신선 제품 수출국가 및 기업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식품 안전 관련 제도 강화가 한국의 농식품 수출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제도 강화가 한국의 농식품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최소품질기준(minimum Quality standards, MQS) 이론에 따라 한국 기업이 중국 식품 안전 제도에 부합한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한국의 농식품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농식품 안전 제도 강화가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임. 물론, 최소 품질기준 이론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농식품 안전 관련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이 필요함.
- 한국 대사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한국 정부도 중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국의 농식품 안전 관련 제도 및 변경 사항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농식품 관련 제도 강화와 새로운 여러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제도(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따라서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

1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2021년 한국의 농축산물 교역 자료를 활용한 결과, 중국(2위)은 일본(1위) 다음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임.

1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2)의 「2021년 연간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을 참고함.



중국의 2022년 농식품 관련 규정과 표준

는 한국 기업은 정부 차원의 도움 외에도 중국 내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내 대리인 또는 업체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즉, 한국 정부와 한국 수출기업 모두 중국 내 농식품 안전제도 강화가 농식품 수출을 방해하는 요인이 아닌 수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참고문헌

- 류예리, 박원석, 오선영, 최원목, 최성열. 2014. 한-중 FTA 대비 식·의약품분야 제도분석 및 대응 방안.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재영. 2018. 중국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0권 제4호.
- 전보희, 조의윤. 2021.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21년 38호.
- 한국무역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6.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 『2019 주요국 라벨링제도 보고서 II 권(중국, 홍콩, 대만,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 『2021년 연간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황운중. 2020. 비관세장벽 수출효과-한국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Vol 45, No 1.
- USDA. 2022.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 USDA. <https://www.fas.usda.gov/data/china-food-and-agricultural-import-regulations-and-standards-country-report> (검색일: 2022. 8. 2.).

<참고사이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3. 20.
-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 중국(<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ListPage.do?searchNtnlCls=&searchNtnl=CN>). 검색일: 2022. 9. 13.
-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index.do>). 검색일: 2022. 9. 20.